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3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장기봉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.
-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(안 제 7조)
 -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에서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 전환하고, 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)’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.⁴⁾
-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 등의 업무로 확정함.⁵⁾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그 내용도 적절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이 개정안의 안 제7조제2항은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4) 행정운영과-19823(2024. 8. 26.) 행정·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5) 행정운영과-27562(2024. 11. 27.)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* 실국 사무 : 경제통상국, 보건복지국, 과학인재국, 인구청년정책담당관, 공항지원팀

-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.
- 또한, 정무부지사가 아닌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	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----- <u>장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「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*을 반영
 - *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향·국회 등 업무
-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○ 작성자

- 보건의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조 성 돈